

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55호

4

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 일대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4월 1일
서울특별시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○ 해제기한 연장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구역명	위 치	구역면적(㎡)	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	비고
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	잠실동 320번지 일대	31,630.5	2023.04.02까지	-

○ 참고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.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141) 및 송파구 주거사업과(☎02-2147-2898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56호

3608 ()
 () · () ()
 1) () ·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136호(2020.6.9.)로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 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 및 제28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35호로 결정된 「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4월 1일
 서울특별시장

I.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
1.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결정 조서(변경)

- 명칭 : 영등포구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(변경없음)
- 위치 :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대(변경없음)
- 면적 : 기정 7,197.0㎡ ⇒ 변경 7,236.7㎡ (증 39.7㎡)

※ 변경사유 : 측량성과 반영에 의한 지구면적 변경

2. 촉진지구의 지정일(변경없음)

3. 사업의 종류(변경없음)

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(변경없음)
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(변경)

1) 토지세목조서 - 기정

연번	소재지			지목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	관계인		
	행정동	본번	부번			성명	주소	지분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
1	신길동	3608	-	대	1,124.0	수탁자 : 주아시아신탁 위탁자 : 랜드코퍼레이션	강남구 영등대로 416, 13층				
2	신길동	3610	-	대	642.0	수탁자 : 주아시아신탁 위탁자 : 랜드코퍼레이션	강남구 영등대로 416, 13층				
3	신길동	3622	-	대	215.0	수탁자 : 주아시아신탁	강남구 영등대로 416, 13층				